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4호, 2021. 3.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2. 26.>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3. 2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3. 24.>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1. 3. 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1. 3. 24.>

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4.>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3. 24.>

[본조신설 2014. 12. 26.]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5. 4.>

[본조신설 2014. 12. 26.]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4.>

부칙 <제135호,2012. 11. 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4.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호,201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6. 5. 4.>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4.>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 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소설),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p>있는 사람</p> <p>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무용	<p>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연극	<p>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영화	<p>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연예(演藝)	<p>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p>

	<p>진행을 담당할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만화	<p>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p> <p>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 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p>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p>
미술 (응용미술을 포	<p>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p>

<p>함한다). 사진, 건축</p>	<p>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한다)</p>
<p>음악, 국악</p>	<p>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2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무용</p>	<p>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연극</p>	<p>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영화</p>	<p>가.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연예(演藝)</p>	<p>가.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p>만화</p>	<p>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p>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 기준
<p>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p>
<p>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p>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3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24.>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구분	유효 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음악, 국악	-	3년
무용	-	3년
연극	-	3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만화	-	5년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 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년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년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